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31 발의연월일: 2020. 8. 10.

발 의 자:장혜영·심상정·배진교

강은미 • 류호정 • 이은주

권인숙 · 김예지 · 남인순

이종성 · 장경태 · 조정훈

지성호 · 최혜영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 「국회법」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, 방청의 허가,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.

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위원회의 회의,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,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
###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(안 제149조).
- 나.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,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5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정 치적"을 "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하고, 정치적"으로 한다.

이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.

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2조의2(방청의 편의제공) 국회는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한다.

- 1. 점자안내서 및 자막 등 물적 지원
- 2. 한국수어통역 및 안내보조 등 인적 지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9조(국회에 의한 방송) ① 국	제149조(국회에 의한 방송) ① -
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	
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, 그	
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	
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	
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	
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장애인의 시청</u>
	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·
	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이용
	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	2
객관적이어야 하며, <u>정치적</u> ·상	<u>누구</u>
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	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
아니 된다.	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
	하고, 정치적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52조의2(방청의 편의제공) 국
	회는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
	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호
	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
	고 제공하여야 한다.
	1. 점자안내서 및 자막 등 물적

# <u>지원</u> 2. 한국수어통역 및 안내보조 등 인적 지원